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8
------	-----

발의년월일: '93. . . .

발 의 자: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정년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공무원에 한하여 실시하던 3개월간의 특별휴가제도를 별정직공무원까지 확대하여 공무원간 형평유지와 퇴직전 사회 적응능력을 배양토록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근무 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관계법규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및 제66조의 2

- 붙임: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3. 기타참고자료(관계법규등)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⑦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⑦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